

## 졸업과제 연구 규정

제 정 2009. 3.

개 정 2010. 6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에 의거 졸업과제 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졸업과제연구 이수)** ①본 대학 학생은 재학 중 교육과정에 편성된 졸업과제연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학부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개설 또는 이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②졸업과제연구는 정규학기에 이수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여름·겨울학기에 이를 이수할 수 있다.

③실습학기 이수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졸업과제연구를 주말 및 야간수업 등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**제3조(졸업과제 연구계획서)** 학생은 해당학기 초에 해당 전공과 관련된 졸업과제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졸업과제 지도계획서)** ①학부장은 학생이 제출한 졸업과제 연구계획서를 수합하여 전공영역별로 분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지도계획서를 작성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졸업과제 연구 수행방법은 담당지도교수가 정하며 지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졸업과제 지도)** ①지도교수로 배정된 자는 해당 학생 과제수행의 세부계획 수립에서 부터 수행 전 과정을 책임 지도하여야 하며, 출석수업과 과제학습을 병행한다.

②지도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수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졸업과제 발표 및 심사)** ①각 학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졸업과제 연구발표회(발표, 보고, 전시 등)를 가져야한다.

②발표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학부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성적처리)** ①졸업과제 연구에 대한 성적은 순수 실험실습 교과목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.

②졸업과제 연구의 취득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된다.

**제8조(기타)** 졸업과제 연구에 관하여 학칙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